

2026년 음식점 시설개선 자금지원 신청 안내

음식점의 위생 및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하여 「2026년 음식점 시설개선 자금지원 사업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, 지원을 희망하는 분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.

2026. 3. 9.

남 동 구 청 장

1 사업개요

- 사 업 명 : 2026년 음식점 시설개선자금 지원사업
- 사업대상 : 관내 일반음식점, 휴게음식점 18개소
 - 공고일 기준 영업신고 기간 1년 이상으로 현재 영업 중이며,
2025년 연 매출액 3억 미만인 남동구 관내 일반·휴게음식점

[제외대상]

- 공고일 기준으로 영업신고, 영업신고사항 변경(소재지 변경) 신고 또는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업소
- 공고일 기준으로 「식품위생법」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, 그 처분이 끝나는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거나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업소
- **해당 시설을 선정 결정 통보 이전에 기설치한 업소**
- 불법건축물(가건물 등)이 포함된 업소
-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업자
- 휴·폐업 중인 사업자, 지방세 체납 사업자
- 3년 이내 유사사업에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업소

※ 유사 사업 : 주방환기시설개선 자금 지원, 주방문화개선 자금 지원, 키오스크 도입 자금지원, 입식좌석 개선 자금 지원 사업

○ 사업내용 : 음식점 시설개선을 위한 비용 지원 【택 1】

지원항목 【택 1】
1. 기존 좌식테이블에서 입식 테이블로 교체 비용 2. 주방환기시설(후드, 덕트 등)교체 및 청소비용 3. 비대면 결제시스템(키오스크) 설치비용

○ 지원한도 : 업소당 시설개선 소요금액의 80% 지원 ▶ 최대 100만원

- 사업비용 125만원 미만 : 구비 80%, 자부담 20%
- 사업비용 125만원 이상 : 구비 100만원, 나머지 자부담

2 접수방법

○ 접수기간 : 2026. 3. 9.(월) ~ 3. 27.(금). 18:00까지

○ 신청방법 : 방문접수, 우편접수, 이메일접수

○ 접 수 처 : (우21589)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, 식품위생과

- 방 문 : 평일 09:00 ~ 18:00, 보건소 4층 식품위생과
- 우 편 : 2026. 3. 27.(당일 소인까지 유효)
- 이 메 일 : dyj002@korea.kr (이메일 발송 후 전화 요망, 453-8473)

○ 제출서류

신청서류	비 고
1. 음식점 시설개선자금 지원사업 신청서 [붙임1] 2. 사업계획서 [붙임2] 3. 개인정보 등 수집·이용에 관한 동의서 [붙임3] 4. 사업자등록증 사본(사업자 등록 증명원 등) 5. 견적서 원본 및 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6. 청렴 이행서약서 [붙임4] 7. 지방세 완납증명서 8. 2025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9. 주민등록초본(남동구 거주 시 제출)	필수서류 중 미제출 자료 있을 시 선정 제외

3 지원조건

1. 지원금은 사업비 일부 지원이 원칙이므로 자부담금 20% 이상 부담
 2. 지원금은 지원항목에 한하여 지출 **【택 1】**
 - ① 기존 좌식테이블에서 입식 테이블로 교체 비용
 - ② 주방환기시설(후드, 덕트 등)교체 및 청소비용
 - ③ 비대면 결제시스템(키오스크) 설치비용
 3. 사업계획 변경 관련 유의사항
 - **사업계획의 임의 변경 금지**
 - ❖ 남동구청의 승인 없이 사업계획이 현저히 변경되는 경우 지원금의 교부취소 또는 환수 등 불이익 조치
 4. 지원결정사업을 불가피한 사유 없이 포기·중단하였을 경우
 - ❖ 차기 1회 지원 기회 상실
 5. 사업은 2026년 5 ~ 6월 중 완료하여야 하며 완료 후 1월 이내에 정산서(결과보고서) 제출
 - ❖ 지원금 및 자부담 내역 모두 포함
 6. 사업비는 사업 시행자 명의의 신용(체크)카드로 지출
 - ❖ 정산서 제출 시 증빙자료 신용카드매출전표, 견적서, 거래명세서 첨부
 7. 기타 유의사항
 -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었다 할지라도 추후 제외 대상 또는 비대상 사업으로 확인될 경우 지원금 전액 환수 조치
- ⇒ 위 지원조건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은 영업주는 차기 1회 신청자격 상실

4 지원사업 선정 및 통지

- 지원대상 선정 통보 : 2026. 4. 30.(목) 한
- 통보방법 : 유선 및 문자를 통하여 개별 통보
- ※ 신청서류 등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